

2020회계연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증감없이 289억 6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제4회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8,966,232	28,966,232	0	0.0%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0	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0	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0	0.0%
보조금	10,721,781	10,721,781	0	0.0%
국고보조금등	10,721,781	10,721,781	0	0.0%
지방채	5,300,000	5,300,000	0	0.0%
국내차입금	5,300,000	5,300,00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55	97,255	0	0.0%
보전수입등	97,255	97,255	0	0.0%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1,819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1,750억 7백만원 대비 0.17%(69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제4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788,381	4,175,007	4,181,944	393,563	6,937	10.39%	0.17%	
행정관리	소 계	3,788,381	4,175,007	4,181,944	393,563	6,937	10.39%	0.17%
	행정운영경비	305	305	305	0	0	0.00%	0.00%
	재무활동	0	0	1,242	1,242	1,242	순증	순증
	사업비	3,788,076	4,174,702	4,180,397	392,321	5,695	10.36%	0.14%
교 부 금	-	-	-	-	-	-	-	-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026	33,484	40,421	14,395	6,937	55.3%	20.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2,113	2,034	1,929	△184	△104	△8.7%	△5.1%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750	750	549	△201	△201	△26.8%	△26.8%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30,573	36,558	13,396	5,985	57.8%	19.6%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27	142	142	15	순증	11.8%
국고보조금 반환	-	-	1,242	1,242	1,242	순증	순증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증감없이 289억 6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제4회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8,966,232	28,966,232	0	0.0%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0	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0	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0	0.0%
보조금	10,721,781	10,721,781	0	0.0%
국고보조금등	10,721,781	10,721,781	0	0.0%
지방채	5,300,000	5,300,000	0	0.0%
국내차입금	5,300,000	5,300,00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55	97,255	0	0.0%
보전수입등	97,255	97,255	0	0.0%

- 평생교육국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입수입인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료(2억 3천만원), 서울자유시민대학 대관료(550만원), 광명근로청소년 운동장 운영 수입(1억 4천만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사업의 수수료(32억 6천만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고유사무 변경 등으로 세입 감추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광명근로청소년 운동장 수입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징수되고 있으며, 친환경식재료 관리사업의 수수료는 감추경을 요청하였으나,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제외되었음.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경우 타 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3월~11월)의 60%가 지나도록 사업장을 재개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캠핑장 휴장으로 인해 세출 예산을 감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기정예산 규모를 유지하며 감액하지 않고 있으며,

※ 2020년 가족자연체험시설 세입 추계액 및 산출내역

2020년 추계액 : 230,144천원

(일반) $165\text{테크} \times 255\text{일} \times 23\% \times 25,300\text{원} \times 80\% = 195,867,540\text{원}$

(감면) $165\text{테크} \times 255\text{일} \times 23\% \times 17,710\text{원} \times 20\% = 34,276,820\text{원}$

- 자유시민대학의 운영은 2019년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하여, 자유시민대학의 대관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입에 편성되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관행적으로 자유시민대학 대관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부적정한 세입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세입관리를 일관하고 있는바, 오류없는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0년 자유시민대학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0년 추계액 : 5,500천원

· 산출내역 : 대관료 × 대관횟수

10,000원×10회=100,000원, 20,000원×100회=2,000,000원,

30,000원×100회=3,000,000원, 40,000원×10회= 400,000원

- 평생교육국은 세입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감액 조정 편성 등 서울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제4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026	33,484	40,421	14,395	6,937	55.3%	20.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	2,113	2,034	1,929	△184	△104	△8.7%	△5.1%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750	750	549	△201	△201	△26.8%	△26.8%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30,573	36,558	13,396	5,985	57.8%	19.6%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27	142	142	15	순증	11.8%
국고보조금 반환	-	-	1,242	1,242	1,242	순증	순증

가.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 본 사업은 지방폐교를 활용하여 캠핑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조성예정인 캠핑장의 개장이 보류되어,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950만원을 감액하고,
 -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전액(2천 6백 10만원), 텐트구입비 58.4%(5천 6백 20만원),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54.2%(2천 6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20억 3천 3백만원) 대비 5.1%(1억 4백만원) 감액한 19억 2천 9백 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추가경정 현황 〉 (단위:천 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2,033,670	1,929,270	△104,400	△5.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6,780	557,280	△19,500	△3.4%
기존운영(8개소)	642,000	642,000	0	-
신규조성(1개소)	19,500	0	△19,500	△100.0%
사무관리비	349,100	264,200	△84,900	△24.3%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211,500	211,500	0	△100.0%
폐교임대료	21,500	21,500	0	△100.0%
행사운영비(9개소)	26,100	0	△26,100	△200.0%
텐트구입비	96,200	40,000	△56,200	△58.4%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4,800	2,200	△2,600	54.2%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800	1,800	0	-
공공운영비	150,740	150,74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0	4,050	0	-
시설비	884,000	884,00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0	69,000	0	-

○ 본 사업의 텐트구입비는 9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5천 6백 2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나,

- 평생교육국이 감액한 금액(5천 6백 20만원)을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2020년 텐트 1개당 단가 : 52만원)로 나누어 보면, 소수점 한자리(108.7개)까지 계산해야 하는바, 평생교육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0년 감추경한 텐트 구입예산 및 수량

$$\text{텐트구입예산 } 56,200,000 \text{원} \div \text{텐트1개당 단가 } 520,000 \text{원} = 108.7 \text{개}$$

- 평생교육국은 텐트구입비의 감액사유를 ‘코로나로 인한 휴장’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9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납품지연(2020년 1월 납품)’을 사유로 텐트구입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 2019년 사고이월시킨 금액(5천 2백만원)을 구입단가(2019년 텐트구입 단가:48만원)로 나누어 보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한 물량과 같은 규모(108.3개)인바, 제출된 감액사유의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 납품받은 텐트 구입예산 및 수량

텐트구입예산 52,000,000원 ÷ 텐트1개당 단가 480,000원 = 108.3개

- 한편,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에서 제출자료의 구매단가와 수량이 예산편성 시 제출한 텐트의 구매단가 및 구매수량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세밀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2019년 및 2020년 텐트구입비의 산출기초 〉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252,500천원	○ 사무관리비 = 361,900천원
	-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등 17,000,000원*8개소 = 136,000천원	-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등 23,500,000원*9개소 = 211,500천원
	- 폐교임대료 5,000,000원*5개소 = 25,000천원	- 폐교임대료 4,300,000원*5개소 = 21,500천원
	- 행사운영비 2,500,000원*8개소 = 20,000천원	- 행사운영비 2,900,000원*9개소 = 26,100천원
	- 텐트 구입비 480,000원*135개 = 64,800천원	- 텐트 구입비 520,000원*185개 = 96,200천원
	-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5,400,000원 = 5,400천원	-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4,800,000원 = 4,8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100,000원*13식 = 1,3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100,000원*18식 = 1,800천원

출처 : 2020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31~32P 발췌

〈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2020년 텐트 구입비 예산 〉

- (기존) 텐트 구입비 : 96,200천원
- 세부 산출 내역 : 583,000원 × 165개 = 96,200천원

구분	데크 당 구성 품목 구매 단가(단위: 원)			구매 수량 (총데크수:165)	산출금액 (단위: 원)
	평균 단가	4인용	5인용		
합 계	583,000	510,000	656,000	165	96,195,000
텐트(내피, 외피 세트)	358,000	320,000	396,000		
타프	225,000	190,000	260,000		

- (감추경) 텐트 구입비 : 40,000천원 ※ 감추경액 : △56,200천원
- 세부 산출 내역 : 583,000원 × 68개 = 40,000천원
- ※ 횡성 등 7곳에 총 68개 배부
 - 횡성/포천/제천/함평/봉화/상주 (각10개), 서천(8개)
 - 코로나19 방역으로 휴장기간이 길어서 텐트 구입을 줄임
- ※ 철원 배부 없음 : 돼지열병으로 2020년 미개장

- 평생교육국은 매년 반복하여 연말에 텐트구입비를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 연말에 본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는 내년에 사용할 텐트를 금년 12월에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법령 및 예산원칙의 준수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021년도에 사용할 텐트는 2020년도 12월에 집행할 예산과 2019년도에 지연 납품된 물품(텐트)으로 충당이 가능한바, 2021회계년도 평생교육국 예산 심의 시 텐트구입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은 가족자연체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필수적 물품을 꼼꼼히 관리하는 등 방만한 사업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본 사업관련 사고이월 내역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64,490	351,880	299,945	51,935	12,610

※ 텐트구입예산 52,000,000원 ÷ 텐트1개당 단가 480,000원 = 108.3개

나.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 본 사업은 ‘자치구 방과 후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위해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당초 25개구 →18개구)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5천만원에서 30.9%(2억 1백만원) 감액한 4억 4천 9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참여 자치구 :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 참여

미참여 자치구(7개) : 강남, 강서, 구로, 동대문, 서초, 성동, 송파

※ 자치구의 미참여 사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 (마을)방과후 활동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어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감소

〈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추가경정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계	750,000	549,000	△201,000	△26.8%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000	449,000	△201,000	△30.9%

- 본 사업은 학교 정규교육 외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방과 후 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나,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의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7억 5천만원)와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바,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산출되는지 여부, 중복적 예산 편성 여부 등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소년센터 휴관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서울유스호스텔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305억 7천 3백만원에서 59억 8천 5백만원(19.6%)을 증액한 365억 5천 8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추가경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계	30,572,821	36,558,204	5,985,383	19.6%
사무관리비	95,000	95,000	0	
공공운영비	307,716	307,716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기타보상금	70,000	70,000	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0	100,000	0	
민간위탁금	29,862,305	35,847,688	5,985,383	20.0%
민간위탁사업비	133,000	133,000	0	

- 평생교육국은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 전액(164억원)을 조기 배정하였으나,
 - 5월까지 청소년센터 21개소의 누적 손실액(95억원 규모)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했고,
 -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1개 청소년센터 중 15개소의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운영손실을 일부 보전(49억 9천 5백만원)하고, 생활치료 센터로 지정된 서울유스호스텔 1개소의 손실(10억원)을 보전하려는 것임.

※ 청소년센터의 운영중단 현황

- 1차 : 2020.2.24(월) ~ 7.19(일), 7.20 ~ 8.15 운영
- 2차 : 2020.8.16(일) ~ 8.31(월) (예정)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이 지원형시설보다 사업수익의 의존도가 높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유지하기 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립형시설 14개소와 지원형 센터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센터 1개소(서울청소년센터) 등 총 15개소의 지원예산(49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의 손실금 보전 기본방향 》

- ❖ 사업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립형 시설 등 재정취약 시설 우선 지원
 - 수영장 보유 14개 자립형 시설 및 1개 재정취약 지원형 시설 지원
- ❖ 휴관기간 중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최소 지급기준 70% 적용
- ❖ 공공요금, 용역비 등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긴급 지원
 - 운영비는 최소 고정지출 범위 내 실비수준으로 전액 지원

※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 예정 대상

- 자립형시설 14개소 +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 청소년센터의 자립형센터·지원형센터 구분

- 구분기준 : 수익사업 시설의 유무(수영장 등)
- 자립형시설(14개소) : 문래·목동·수서·노원·강북·구로·성북·마포·은평·성동·금천·망우·동대문·서대문 청소년센터
- 지원형시설(7개소) : 서울·강동·중랑·창동·광진·화곡·보라매 청소년센터

※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경이후 청소년센터의 손실 보전

평생교육국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센터의 휴관이 지속될 경우, 청소년센터에 이미 교유한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청소년센터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에 있음.

〈 청소년센터 손실지원금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시립청소년센터				조정액 (인건비70%)	비고
		합계	6월	7월	8월		
청소년센터 (15개소)	계	6,737	2,195	2,426	2,116	4,995	자립형
	인건비	5,806	1,875	2,123	1,807	4,064	
	운영비	931	320	303	309	931	
강북	인건비	404	124	153	128	283	
	운영비	53	19	19	15	53	
구로	인건비	272	84	103	85	190	
	운영비	29	11	8	11	29	
금천	인건비	353	118	118	117	247	
	운영비	25	8	9	8	25	
노원	인건비	673	224	224	224	471	
	운영비	53	19	16	19	53	
동대문	인건비	305	96	115	94	213	
	운영비	46	21	9	15	46	
마포	인건비	313	96	122	95	219	
	운영비	119	40	40	40	119	
망우	인건비	446	135	172	139	312	
	운영비	81	30	16	35	81	
목동	인건비	415	139	160	116	290	
	운영비	137	46	46	46	137	
문래	인건비	532	188	186	159	373	
	운영비	38	18	10	10	38	

구 분		시립청소년센터				조정액 (인건비70%)	비고	
		합계	6월	7월	8월			
서대문	인건비	415	151	142	123	291		
	운영비	45	15	15	15	45		
성동	인건비	366	118	131	118	256		
	운영비	73	20	30	23	73		
성북	인건비	293	87	112	95	205		
	운영비	69	17	35	17	69		
수서	인건비	388	120	150	118	272		
	운영비	57	19	19	19	57		
은평	인건비	342	109	124	109	239		
	운영비	40	15	10	15	40		
서울	인건비	290	88	113	88	203		지원형
	운영비	66	22	22	22	66		

○ 청소년센터의 재정위기는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금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일부만을 편성하여, 청소년센터의 운영비 부족분은 자체 수익금을 활용하도록 한 것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센터에서 수익금(민간위탁기관의 수입)을 운영비 등(민간위탁기관의 지출)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이나,

- 평생교육국은 이러한 사항을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하여 편법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청소년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운영중단으로 인한 청소년센터의 손실을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급한 시설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처라고 하나, 운영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자립형 시설에만 국한된 상황인 아닌 지원형 시설도 손실이 있는바, 손실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형 시설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본 사업은 청소년쉼터의 시설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교체, 사무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 국비 변경(증액)에 따라 서울시의 분담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1억 2천 7백만원에서 11.8%(1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추가경정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x71,237) 127,474	(x71,237) 142,474	(x-) 15,000	11.8%
민간위탁금	(x71,237) 127,474	(x71,237) 142,474	(x-) 15,000	11.8%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분담비율 : 국비(50%) : 시비(50%)

- 본 사업은 국비교부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 (2020.6.30.)되었으며, 추경 이후 국비가 다시 교부되어, 국비(1천5백만원)는 간주처리(2020.7.3.)하고, 서울시 분담분(1천 5백만원)은 이번 제4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본 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조기 확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본 예산의 조속한 배정과 집행 등 연내 집행을 통한 개선된 서비스 제공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사업추진 후 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총 3개 사업에 12억 4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반환의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상세 내역
계	(x0) 0	(x0) 1,24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0,739 ◦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집행잔액 3,264
국고보조금 반환	(x0) 0	(x0) 1,24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불용액 1,098,000

- 국고보조금 반환은 집행(2019 회계연도) 후 정산이 완료된 해(2020회계연도)의 다음연도(2021 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하는 것이나, 평생교육국은 내년 ‘재원부족의 우려’가 있어, ‘우선 반환’하라는 권고(예산과)에 따라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
- 이는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정부부처의 반환 요구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의회의 결산 심사도 완료했는바,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